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 지방○○○ ○○○
(전 ○○○○서 지방○○○)
- ②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서)
- ③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서)
- ④ 광주광역시 ○○○○서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2. 28.부터 2015. 12. 31.까지, 지방○○○ ○○○은 2015. 4. 7.부터 2016. 9. 30.까지, 지방○○○ ○○○은 2015. 10. 1.부터 2017. 3. 31.까지 광주광역시 ○○○○서 ○○○○과에서 징계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범죄통보사건을 담당하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고,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 ○○○○과 지방○○○ ○○○, 지방○○○ ○○○는 2015. 6. 23. 접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통보 사건을 담당하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식은 피의사실 및 죄증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이 필요치 않아 피의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인 바, ‘피해자와의 민사상 보상 상황 및 법원의 형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결정¹⁾”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연기하였다.

그러나 구약식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구약식 사건’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요구를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아니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통보(구약식) 공무원 조치계획 보고(○○○○과-0000)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 지방○○○ ○○○는 관련 규정에 대한 소관기관 질의 및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연기하였다.

이후 지방○○○ ○○○, 지방○○○ ○○○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무원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를 하면서 “위 사건이 비위라고 보기 어렵고 내용이 경미한 과실인 점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정신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통보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 구약식 사건은 지방○○○ ○○○이 00고 0000호 ○○○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4. 4. 21. 08:20경 광주 ○○구 ○○○로 000번길 ○○○ 식당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어린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통보된 사건이다.

구약식 사건의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외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위 사건은 지방○○○ ○○○이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 ○○○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며, 감사기간인 2017년 9월 현재 징계의결요구 기한이 지나게 되어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무원 범죄통보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